

[별표 1의2] <개정 2005.7.27>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보수설비	가. 깎게이지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럭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자키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술인력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